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「2026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」의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

- 「2026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」 참가기업 모집과 관련한 운영·관리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.

수집·이용할 항목

필수항목

- 개인식별정보 (성명, 직위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이메일 등)

보유·이용기간

-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(최대 5년)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2.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

- 주관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, 기관에게 「2026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」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선정기업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합니다.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026년 월 일

대표자 : (서명 또는 직인)

담당자 : (서명)

I 기업개요

1) 수행기업 소개 ※'사업내용, 핵심기술, 조직구조'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

2) 추진체계 및 역할 ※업무분장 현황 및 담당자별 역할을 상세히 기재

연번	성명	직위	업무분장
1	000	대표이사	• 프로그램 운영 총괄 • 홍보/마케팅 전담
2	000	팀장	• 기술 개발 및 운영 • ...
...	000		

2 수행계획 및 기대효과

1) 제품·서비스·기술 소개

- ※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업할 제품, 서비스, 기술에 대한 소개
- ※ 기술의 핵심내용 및 기술 완성도(①개발단계 ②지식재산권 확보 ③상용화 준비 ④사업화 완료, TRL 수준 증빙), 기술경쟁력 등 자유롭게 기술

2) 시장 기회

- ※ 비즈니스 적용계획, 시장성(목표시장, 수익모델, 성장계획 등), 사업성, 현재까지의 시장진출 주요성과 등 기술

3) 구체적인 실증·협력계획

- ※ 제시한 모집분야에 수행기업이 참여할 구체적인 내용 기술

4) 실증·협력 목표 및 결과 검증계획

- ※ 실증 및 협력을 통한 목표를 제시하고, 프로젝트 수행 후 결과에 대한 검증계획 기술
- * 결과는 공인시험인증기관 검증 또는 유사 수준으로 검증계획 작성 요망

5) 기대효과

- ※ ESG 측면에서의 환경·사회적 기여도 등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산업 파급효과 등 주요 기대효과 기술

3 지원금 사용계획

구분	산출식 * 공급단가 x 횟수로 세부내역 기재	금액(VAT제외)
기술실증	시제품 제작 : 6,000,000원 x 1식	원
경영서비스	회계정산수수료(정액) : 550,000원 x 1식	원
시장조사		원
물류·통관		원
합 계		원

※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 (제출 시 하기 표는 삭제)

항목	세부내용
기술실증	기술실증을 위한 직접 비용 - 시제품 제작, 장비비(구입·임차), 기기 설치비, 재료비, SW 개발, 소모품 구매, 클라우드 등 SaaS 이용, 라이선스 취득 등 ※ 내부 인건비는 사용불가. 단, 장비운영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 및 지급증빙 지참 시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가능
	증빙서류 견적서, 거래내역서, 결과보고서
경영서비스	경영 관련 서비스 구매 비용 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, 제품 시험, 공인기관 인증·검증, 디자인 개선, 지급보증보험, 회계정산수수료, 안전 관련 관리비 등 ※ 사용불가비용: 대리인 성공보수료, 내부 인건비
	증빙서류 견적서, 용역계약서, 결과보고서, 출원등록증
시장조사	시장현황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조사용역비 - 전문조사기관 등
	증빙서류 견적서, 과업지시서, 결과보고서
물류·통관	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- 제품 운송비, 통관료 등
	증빙서류 견적서, 운송확인증, 보관확인증, 인수증, 관납료 영수증

※ 공통사항

-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만 사업비로 사용 인정하며,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더라도 위 항목 외 각종 경비(회의비, 일반관리비 등)는 불인정
- 부가세(국내),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로 불인정
- 임차를 포함한 모든 경비 집행 인정 기한은 사업기간 내로 함
- 모든 비용 거래는 세금계산서 혹은 이에 준하는 회계 증빙자료만 인정
- 회계정산수수료는 550천원 편성 필요, 향후 SBA 지정 회계법인 위탁 정산 예정